

<붙임 2-1>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계약) 일반조건**

제1조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마포나루 메타버스 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의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을 위한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3년 이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하 ’ 공단 ‘이라고 한다.)과 협의 후 1회에 한정하여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사용료) 사용료는 낙찰금액(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제4조 (사용료 납부) 사용료는 사용허가 개시일 전일까지 ’ 공단 ‘에서 지정한 계좌로 사용료 전액(분납 불가)을 납부하여야 한다.(만약,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본 조건 제13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취소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기간 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 이외에는 여하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계약기간 동안 공사 등 ‘도서관’ 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운영 제한·중지 기간이 발생할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한다.

제6조 (손해보험증서 등의 제출)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허가권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재산평가액 이상의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식품위생과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사고 발생 시 1인당 3천만 원 이상, 사고 건당 1억 원 이상)과 계약이행보증보험(연간 총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도 가입하여 그 증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및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지체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한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 하고,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용 또는 수익에 따른 부담을 진다.

제9조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허가권자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사용허가 받은 장소 및 판매품목을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협의 없이 변경하는 것(단,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제11조 (영구시설물의 설치 금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허가권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배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연고권의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허가기간 만료 후에는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 (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할 때
3. 이용자에게 욕설, 성추행, 불친절, 불량식품 판매 행위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때
4. 그 밖의 ‘공단’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14조 (사용허가 취소 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의 손해가 있더라도 ‘공단’에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① 사용인은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한 경우 제5조에 의하여 잔액을 반환한다.

제16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허가권자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권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자는 제1조에 명시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본 계약 사항에 명시된 내용은 물론 허가재산의 관리에 대하여는 일체 ‘공단’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 (허가서 수령 및 응낙서 제출) 사용인은 본 허가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응낙서를 본 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의 효력)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은 허

가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3조 (그 밖의 사항) 본 허가조건에 제시한 사항 이외의 일반사항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에 따른다.

<붙임 2-2>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계약) 특수조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유재산(멀티 자판기 설치장소)의 사용허가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수조건을 부과하여 ‘공단’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1. 사용자는 판매대상 물품의 제조회사와 가격에 대해 ‘공단’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판매하는 물품 및 가격은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청소년 구입 불가 품목 등의 판매는 금지하고, 임의 가공 또는 직접 가열을 요하는 조리 식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용자는 취급하는 모든 제품의 유효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모든 판매 품목은 상표등록이 된 것이어야 한다.
3. 사용자는 멀티 자동판매기 운영에 따른 당월 제세공과금(전기요금 등)을 ‘공단’에서 제시하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공단’ 건축물 등 파손에 대해 수선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5. 사용자는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용기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단’ 직원 입회 하에 자동판매기를 철거 하여야 한다.
7. 사용자는 이용자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8. 유효기간이 지난 품목 또는 불량식품 등을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여 식중독 등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9. 불량식품과 판매대상 물품 이외 물품의 판매는 금하며, 이를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신규 사업자일 경우 사용 개시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필하고 증명서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사용자는 ‘공단’에서 멀티 자판기의 설치장소 및 판매품목 변경을 원할시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 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공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 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같은 뇌물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관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그 밖의 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 관련, 공단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끝.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 건명 : 마포나루 메타버스 도서관 멀티 자판기 사용·수익 허가

당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공단에서 시행하는(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공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참여하지 않겠으며,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귀 공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공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들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공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공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준공과 관련하여 발주관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음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되면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

서약자 성명 : _____

법인명(대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2-5>

[illegible]

<붙임 2-6>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또는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입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마포나루 메타버스 도서관 자동판매기 운영(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마포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